

# 청 주 지 방 법 원

## 제 1 형 사 부

### 판 결

사 건 2015노20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병규(기소), 조현일(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정74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7. 17.

###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 가. 항소이유의 요지

#####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법원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서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함에 있어 실제로는 2009. 7. 1.경부터 2012. 9. 19.경까지 미용실 운영에 따른 피고인의 월 평균 수입이 180만원임에도 160만원으로 허위보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탓에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의 부분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여 착오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2013. 1. 1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기 전에 다시 월평균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였는바, 위와 같이 허위보고하는데 있어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2. 당심의 판단

###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의(犯意)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

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위 법원에 피고인의 월 평균 수입을 허위보고함에 있어 고의(故意)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동업자 ●●●과의 동업관계 정산 때문에 착오로 허위보고를 한 것이지 실제 수입을 숨길 고의로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서 월 평균 수입을 수정하였던 경위는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월 평균 수입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동업자와의 정산내역이 바뀌거나 정산내역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해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동업자와의 수입배분율을 피고인이 임의로 실제와 다르게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① 피고인은 2012. 9. 13.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에 첨부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월 평균 수입 140만원, 연 수입 1,680만원'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450~451쪽).
- ②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생절차(이 법원 2012개회16310)에서 법원의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고 제출한 2012. 11. 6.자 보정서에 "월 평균 수입 280만원을 놓고 피고인이 160만원, ●●●이 120만원 정도 가져간다면서

피고인, 동업자 ●●●의 수입배분이 '6:4'인데 종래 '5:5'라고 보고한 부분은 허위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위 보정서에 첨부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월 평균 수입 160만원, 연 수입 1,920만원'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455~455쪽).

- ③ 피고인은 다시 2013. 1. 4.자 보정서에서, 위 2012. 11. 6.자 보정서에 기재하였던 월 평균 수입 '160만원'을 '180만원'으로 수정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위 2012. 11. 6.자 보정서에서 "다만 신청인(피고인)이 법원에 죄송하다는 사죄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과의 동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수입의 절반씩을 나누는 것으로 하여야 신청인의 변제금을 일부라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5:5로 표기한 부분을 사죄드리며, 신청인의 가용소득을 14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하고 가용소득 또한 65만원에서 77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내용을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457쪽).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시 2013. 1. 4.자 보정서에서 피고인의 월 평균 수입에 대하여 2012. 11. 6.자 보정서에 기재하였던 '160만원'을 '180만원'으로 수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60쪽). 또한 피고인이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받은 후, 다시 2013. 10. 17.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법원 2013개회19804)을 하면서 제출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서도 월 평균 수입을 '18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위 2012. 11. 6.자 보정서에서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허위로 기재하였던 140만원을 160만원으로 수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내용조차 실제 월수입 180만원을 반영한 것이 아닌 허위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위 2012. 11. 6.자 보정서에서 피고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미용실의 운영내역과 특히 동업자 ●●●과의 관계, 수입배분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데, 단지 법무사에게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절차를 위임하여 잘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월 평균 수입을 수차례 변경한 것에 대하여 "제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판에 수입을 곧이곧대로 신고하면 채권자들에게 많은 금액을 배당해야 하므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가능한 줄이려고 저의 월 소득 및 연간 사업소득을 축소하여 기재했던 것입니다", "개인회생위원으로부터 '월 평균 수입을 조금 올릴 수 없느냐'는 전화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저의 순수입인 월 180만원을 기재하였던 것입니다"라고 각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490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단순히 착오에 의하여 위와 같은 허위보고를 하였던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의 월 평균 수입에 대한 허위신고와 관련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는 회생위원의 권고에 따라 자신의 월 평균 수입을 사실대로 수정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종래 결핵 증상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가 다시 2012년 재발하여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전과 없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라고 할 것

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던 피고인이 채권자들에 대한 분할변제 및 채무탕감의 전제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서 대해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위원의 구체적인 보정권고에 따라 최초 신고내용을 수정하는 보정서에서 마저도 허위내용을 신고하였고, 특히 남편의 월 평균수입은 실제보다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신고하였던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원심 및 당심에서는 동업자와의 정산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는데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로 '단지 법무사에 개인회생신청절차를 위임하였던 탓에 잘 몰라서 발생한 일'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창모 \_\_\_\_\_

                 판사      김홍섭 \_\_\_\_\_

                 판사      강경목 \_\_\_\_\_